

1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 ②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 ③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 ⑤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해설

② (×)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 내 사무를 자주재원으로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정치참여,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정치적 활동과 관련성을 갖는다.

답 ②

2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국가결산보고서

해설

•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cf)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⑤

3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 ① 정무직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③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 ④ 4급 이상 공무원 ⑤ 5급 이하 공무원

해설

- ① (×) 정무직은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님
- ②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성과계약등의 평가’ 대상
- ③ (×)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성과계약등의 평가’ 대상
- ④ (×) 일반직 4급 이상은 ‘성과계약등의 평가’ 대상
- ⑤ (○) 일반직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성적평정을 ‘성과계약 등의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일반직(연구직·지도직 포함)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며 임기제공무원은 일부 규정(경력평정, 승진후보자 평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정직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에 준하여 평가하며, 특정직은 개별 법령 규정에 따른다. 정무직은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다.

방식	성과계약 등의 평가	근무성적평가
평가대상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4급 이상, 연구관·지도관, 전문직공무원 (5급 이하나 우정직도 소속장관이 인정시 가능)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지도사, 우정직, 전문경력관
	일반직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5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평가시기	정기 : 연 1회(12.31 기준.)	① 정기 : 연 2회(6.30, 12.31 기준). 단, 연 1회만 실시 가능 ② 수시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발생시
평정주체 (복수평정)	①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 ②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미지정 가능)	
평가항목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 하나 이상 * 성과목표달성도가 평가항목의 필수내용은 아님	평가항목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부서단위 운영평가 추가 가능) *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장관이 직급별·부서별·업무분야별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정함
	성과계약의 체결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함(기관장 또는 부기관장과 실·국장급간, 실·국장급과 과장급간 등 직근상하급자 간 체결).	성과목표의 선정 :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함
평가등급	평가등급 수 3개 이상. 절대평가. 단 고위공무원단은 5등급·상대평가와 강제배분법(최상위 20% 이하, 하위 2개 등급 10% 이상).	평가등급 수 3개 이상. 상대평가, 강제배분법(최상위 20% 최하위 10% 비율)
평가위원회	규정 없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승진후보자명부	미작성	작성(근무성적평가점수 80% + 경력평정점 20% + 가점 5점)

절차 (공통)	① 성과면담 : 평가 전 사전면담, 평가 후 사후면담(최하위등급 받은 공무원의 향후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향상 위한 면담) ② 평정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평정 완료시 평정 대상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 본인이 요청시 공개x) • 공개시 단점 : 관대화 초래, 평정자와 피평정자 간 인간관계 악화, 성적불량자의 사기 저하. • 공개시 장점 : 능력발전에 활용 가능, 평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평정결과의 광범위한 활용. ③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평가자의 평정결과에 대해 확인자에게 이의 신청 가능(확인자가 없으면 평가자에게 신청)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 신청 : 근무성적평가의 경우(성과계약등의 평가의 경우x)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시. ④ 소청심사의 제기 가능성 :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인.
------------	--

답 ⑤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자치구)가 포함된다.
-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별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 ⑤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해설

이하 지방자치법 규정

- ① (○)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② (○) • 제199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특별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으며 자치구가 아닌 구는 둘 수 있다.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만 둘 수 있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④ (○)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⑤ (○)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답 ③

5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 A씨(30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시 주민 B씨(20세)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다.
- ③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 국적 C씨(45세)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시 비례대표 시의원의 심각한 불법행위 문제를 알고 있는 ○○시 주민 D씨(55세)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시 주민 E씨(57세)는 시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위법에 대해 감사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 ②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③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cf)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④ (○)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⑤ (○)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주민참여제도 관련 참여권자

연령 조건	주민참여 제도	관련 권리자(주민)	
		주민(국민)	외국인인 주민
18세 이상 *주1)	주민투표청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주2)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소환발안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 지방선거 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주민소송 제기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	
	지방선거 피선거권	60일 이상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불가

* 주1) 단,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연령은 현재 19세 이상이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임(국회 통과시 변경 예정)

* 주2) 단, 재외국민의 지방선거선거권자는 영주귀국 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답 ③

6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론은 공식적 제도나 구조는 물론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도 중요하게 강조한다.
- ② 행태주의 행정연구는 가치와 사실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체제이론은 행정현상을 여러 변수 중에서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 ④ 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과 능률성에 기반을 둔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관을 강조한다.
- ⑤ 신행정학 이론은 참여와 형평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실문제의 처방적 연구를 중시한다.

해설

- ② (○) 행태주의는 논리실증주의에 따라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문제만 연구대상으로 삼고 가치문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 ④ (×) 인간관계론은 사회심리적 동기를 강조하는 사회적 인간관.

구 분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궁극적 목적		생산성·능률성 향상 추구(기계적 능률관 vs 사회적 능률관)	
인간관	특징	① 합리인·경제인 - 경제적 유인 중시, 개인주의	① 사회인 - 비경제적 유인, 사회심리적 동기 중시, 집단주의
		② 인간을 기계적 존재로 파악(인간=기계)	② 인간을 감정적 존재로 파악(인간≠기계)
		③ 인간의 합리적·타산적 측면(이성적 측면 강조)	③ 인간의 비합리적·감정적 사회적 측면(감정적 측면 강조)
	조직 목표와 개인목표	① 인간욕구의 단일성·획일성(경제적 욕구 vs 사회적 욕구) ② 인간의 피동성·수동성. ③ 동기부여의 외재성, 외재적 보상 * 단, 동기부여방법은 다름 :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유인, 인간관계론은 사회심리적 유인 교환모형 -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조화·양립 가능	
		직무수행(일,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유인 간 교환	직무수행(일, 생산성 향상)과 사회심리적 유인 간 교환
		저해요인만 제거되면 양 목표는 당연히 균형	이상적 균형상태는 의식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답 ④

7

신공공서비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시민을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한다.
 ㉡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
 ㉣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국민을 정부의 소유자(배의 주인)인 시민으로 본다.
 •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지향성과 고객중심의 행정, 정부축소, 능률성 이념, 기업논리만을 중시하고 시민의 정치성과 형평성·민주성 무시. 정부의 노조기보다 방향키 역할을 강조하여 목적지 설정에 관한 관료권력만 강화시키고, 결국 고객중심을 주장하지만 정부의 소유자(배의 주인)인 시민들이 배제됨. 신공공서비스론은 관료중심의 권력배분적 시각보다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관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행정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과 대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제도 구축을 주장.
 ㉡ (○) • 신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① 신행정론(시민참여 중시), 시민재창조론·신국정관리론(시민을 주체로 인식), 포스트모더니티이론·담론이론(대화과 토론 중시)
 ② 민주적 시티즌십이론 : 단순히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선택론의 근시안적 관점보다는 전체적 거버넌스의 시각과 시민참여 강조. 시민은 자기이익추구의 수준을 넘어 공익에 관심을 갖는 존재이며 거버넌스 과정에 적극 가담하려는 존재로 파악.
 ③ 사회공동체(communitas)모형, 시민사회(civil society)이론 : 정부는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 시민의 교호작용 촉진, 거버넌스와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매개하는 집단들의 집합인 시민사회를 중시.
 ④ 조직상의 인도주의 :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인간중심적 조직관리, 사회적 형평과 대응성의 상호작용 강조. 권한과 통제의 문제보다 시민과 공공조직 종사자의 욕구와 관심에 초점을 둠.
 ㉢ (○) 신공공서비스론에 따르면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고 보고 책임의 다원성을 주장. 정부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시장지향적·성과지향적인 이윤 추구·달성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 공동체가치, 정치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하다고 봄. 이러한 다면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봄.
 ㉣ (×) 공공선택론의 특징이다.

답 ③

8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

- ① 국고보조금 ② 지방교부세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④ 조정교부금 ⑤ 국고부담금

해설

- ④ (×)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국가)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념	경제력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세부담 및 행정수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의 재분배제도. 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		
기능	① 정부 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시정(재정격차 해소, 재정의 균등화) ②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의 합리적·효율적 수행(재원의 보장)		
유형	주체에 의한 분류	지방재정조정 국가(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광역시 ⇨ 군 도 ⇨ 시·군 특별시·광역시 ⇨ 자치구	
용도지정 여부에 의한 분류	특정보조금 (categorical grants)	세부적 조건을 붙여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는 보조금. 개별보조금, 선택적 보조금, 조건부 보조금이라 함. 중앙정부의 통제.	예) 국고보조금
	일반보조금 (general grants)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용도를 선정·집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공식에 근거해 교부액 산정. 비선택적[비조건적] 보조금.	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포괄보조금 (block grants)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 보조금 사용에 총액·용도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 용도는 제한하지 않아 집행상 재량 인정.	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재정불균형의 조정			
목적	수직적 불균형의 조정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	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수평적 불균형의 조정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	예)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의의 :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국고보조금의 재원)이지만,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기획·집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포괄보조금(지역자율계정)을 포함한 재원으로 설계됨.

• 구성 : 4개 계정, 8개 사업군

편성방식	계정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금 방식)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시·군·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 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 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 직접 편성사업

* 지역자율계정은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방식. 포괄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시 국가의 교부조건(지방비 부담 의무,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달리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 으로 수행되는 보조사업.

답 ④

9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부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험으로 진행될 수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 내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
- ④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및 민원업무 감소에 기여한다.
- ⑤ 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해설

- ② (○) 일반적으로 정보는 시장성(구입비용 있음)을 지니지만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자료나 정보로서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공데이터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완화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기관의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출입국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 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보유기관이 유지·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적 체계와 이용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적 체계를 연계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단, 공동이용센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 전자정부서비스는 이용자들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제출·방문접수 등 절차를 줄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일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회비용을 절감시킨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민원업무 처리는 현장방문등을 통한 민원처리 업무를 감소시킨다.
- ⑤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종전에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던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가 고안해내지 못했던 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답 ⑤

10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 ㉡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 ㉢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 ㉣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① ㉠, ㉡

② ㉠, ㉣

③ ㉡, ㉢

④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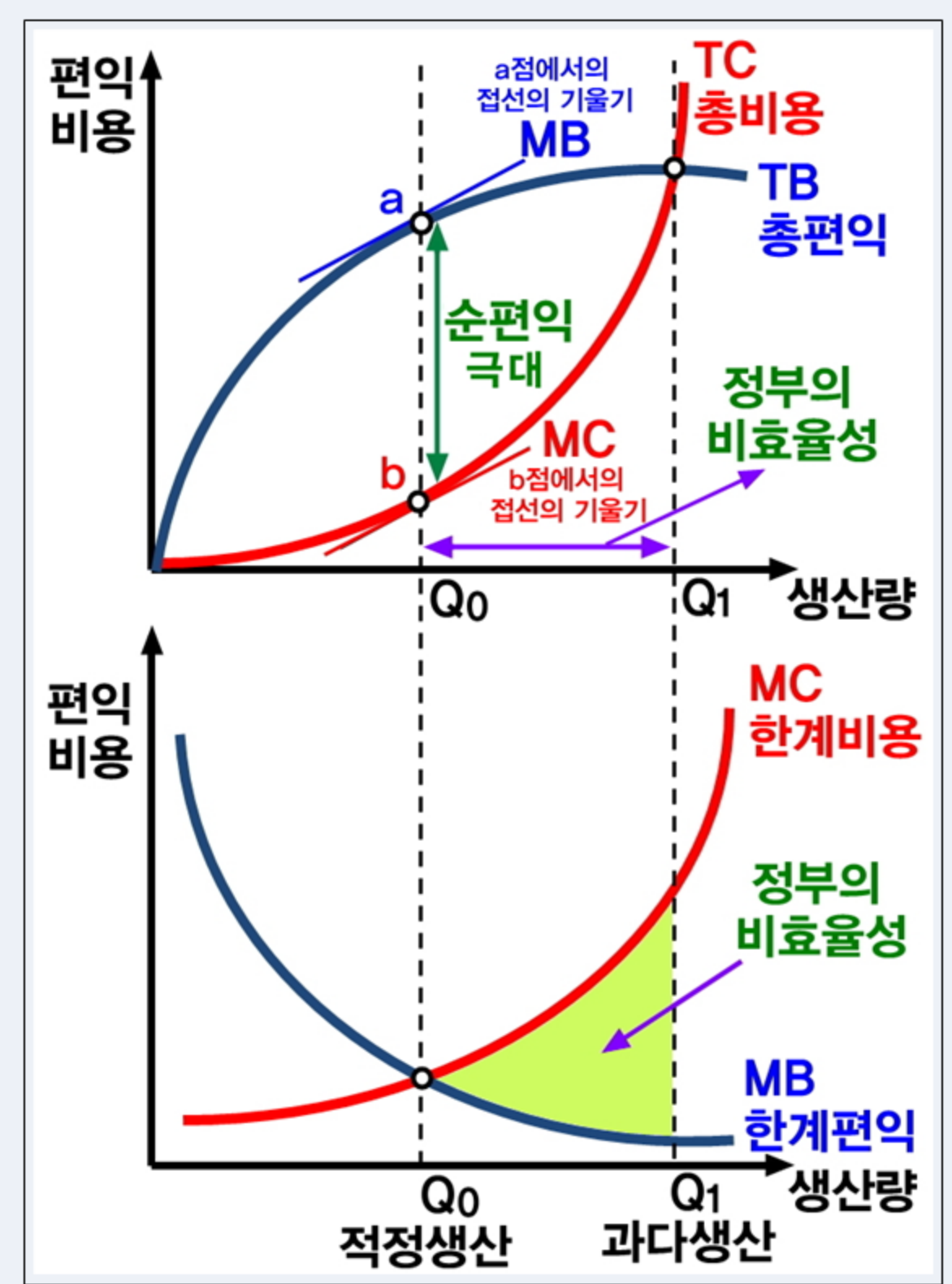
⑤ ㉢, ㉣

해설

㉠ (×) 정부실패의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 니스칸넨(W.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과 관련된다.

※ 니스칸넨(W. Niskanen)의 관료이익(예산)극대화 가설(budget maximization)

- ① **효용극대화**: 관료는 공공재를 산출하여 공급, 정치인(의회 의원)은 구매자.
정치인과 관료는 목적함수가 다르므로 효용극대화의 내용과 다름.
- ㉠ **정치인**: 재선을 목표로 **사회효용[사회후생]**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순편익(=총편익 - 총비용)의 극대화 수준(한계편익=한계비용)**인 Q_0 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함 - **정치적 최적수준(political optimum)**
- ㉡ **관료**: 정치가들과 달리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보다 편익에 더 관심을 두므로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즉 순편익=0이 되는 Q_1 까지 생산을 늘리려 함 - 관료적 최적수준(bureaucratic optimum)**
※ 관료의 예산극대화가 가능한 이유: 관료 업무 성과의 계량적 측정 곤란, 관료의 독점적 업무 수행, 업무의 비용에 대해 의회가 정확한 정보 획득 곤란.
- ② **과잉생산**: 관료가 산출하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관료는 의회로부터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공공재의 산출량을 생산 가능한 최대수준까지 생산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재를 산출하게 되는 낭비적 결과가 발생.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노력이 불필요한 조직이나 정책 등의 유지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실패 발생.



- ㉡ (×)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 (○) 시장에서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해 과소공급 됨(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시장실패 → 정부가 개입해 직접공급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독점성에 따른 X-비효율성 → 정부실패 원인
* 제시된 지문은 다소 문제가 있음.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시장실패 원인에 더 적합한 표현임.
- ㉤ (○) 외부효과(외부경제효과, 외부비경제[외부불경제]효과) → 시장실패 원인

답 ⑤

11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계적 조직은 위계적·경직적 조직문화를 갖는데 비해 학습조직은 적응적 조직문화를 갖는다.
- ② 기계적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분업화에 의해 수행한다.
- ③ 기계적 조직은 경쟁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협력을 중시한다.
- ④ 기계적 조직은 수직적 구조이나 학습조직은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
- ⑤ 기계적 조직은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는 반면에 학습조직은 조직원들에게 공유된다.

해설

②는 반대로 서술됨.

※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

구분	기계적 조직	학습조직
조직구조	수직적 구조(기능 중심)	수평적 구조(업무 프로세스 중심)
통제 및 관리	상위계층의 통제와 관리 일선 직원의 의사결정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 일상적 과업수행의 권한이 위임됨
조직설계	조직원의 과업이 좁고 분명하게 정의된 전문화·분업화 원리에 의해 설계됨.	목표달성을 위해 재량권과 책임을 가짐.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짐(empowerment)
정보	부하를 통제하기 위해 최고관리층에 독점적으로 집중됨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됨
주요 가치	경쟁 중시	협력 중시(직원 간, 부서 간, 외부경쟁사와의 협력 포함)
조직문화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적응적 조직문화(성장을 위한 개방성, 평등, 지속적 개선과 변화가 강조, 구성원 간 협력과 상호작용 중시)

답 ②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
- ②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한다.
- ③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 ④ 행정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관리한다.
- 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①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존재함.

☒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군(群)(단, 특정직은 타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해당. 예) 외무공무원)

- 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②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 제외)의 직위 중 ①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감사원은 고위감사공무원단을 별도로 운영)
- ③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①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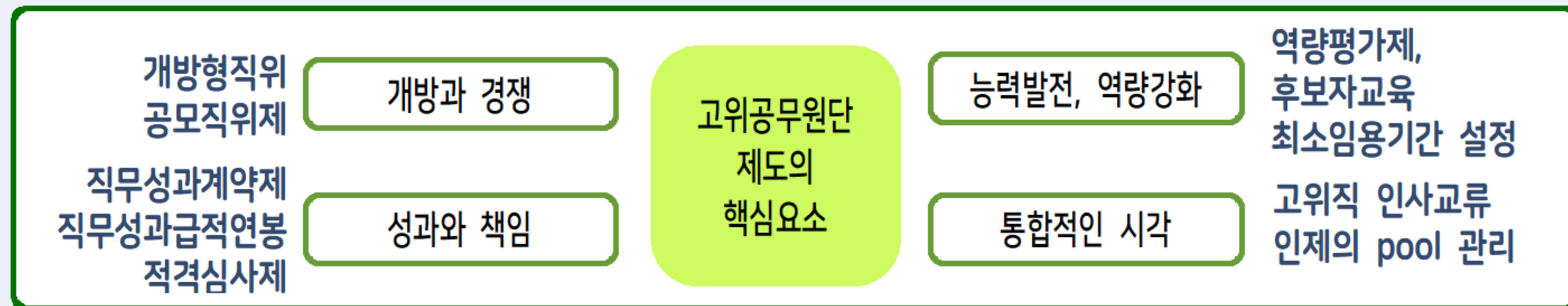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의미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 도의 농업기술원장	㉠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인 장학관으로도 임용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의 기획업무담당실장

④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②④ (○) 실·국장급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풀(pool)로 관리되며,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소속에 관계없이 고위공무원단의 pool 중 적임자를 임용 제청할 수 있고, 부처에 배치되면 소속장관이 인사·복무 관리를 맡는다. 인사혁신처는 초과현원 관리와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인사혁신처의 인사심사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채용·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에만 실시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한다.

③ (○) 신분(계급)보다 일(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3급 계급 및 직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구분을 폐지하고, 직위의 직무값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⑤ (×) 노무현 정부 시기 2006년부터 중앙정부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하여 신분보다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 요소를 대폭 강화하였다.



답 ①

13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규칙을 제정한다.
-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합의형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 ③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⑤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다.

해설

② (×)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중앙인사행정기관이며 비독립 단독형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답 ②

14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 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
- ③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 분위기의 침체가 우려된다.
- ④ 일반행정이 보다는 전문행정이 양성을 목표로 한다.
- ⑤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과 관료의 병리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해설

④ (×)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행정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폐쇄형 임용으로 인해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 충원이 곤란하고, 계급제라는 공직분류 체계 상 전문행정부의 육성이 곤란하다.

답 ④

15 정부조직체계에서 청 단위기관과 소속부처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기상청 - 환경부 | ㉡ 방위사업청 - 산업통상자원부 | ㉢ 소방청 - 행정안전부 |
| ㉣ 특허청 - 기획재정부 | ㉤ 해양경찰청 - 국방부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방위사업청 - 국방부,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2022.6. 기준)



답 ①

16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있다.
- ③ 기술과 환경이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대응적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⑤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확대와 창의성 발현이 요구되고 있다.

해설

-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효율성에 대한 신뢰의 증가는 공식성과 관련되며 정형적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행동이 이뤄지도록 하므로 집권화와 관련성을 갖는다.

☞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집권화의 촉진요인	분권화의 촉진요인
① 위기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 필요시 ② 조직활동의 일관성·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③ 하위조직간 의존도는 높는데 횡적 조정은 어려울 때(갈등 조정) ④ 소규모 조직(구성원 수가 소수), 신설조직(조직의 역사가 짧을 때) ⑤ 재정자원의 규모 증대, 중요도가 높은 결정사항 ⑥ 특정 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 증대 ⑦ 권위주의적 문화 ⑧ 규칙·절차의 합리성·효과성에 대한 신뢰 증가(공식성 증가) ⑨ 일의 전문화, 능력 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분업의 심화, 기능 분립적 구조설계(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⑩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집중될 경우(단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분권화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⑪ 하급자·하급기관의 역량 부족	① 기술 및 환경 변화의 복잡성·동태성 증가(조직의 적응성 필요)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 촉진 ③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동기유발 전략 ④ 조직의 쇄신과 개인적 창의성 발휘 ⑤ 조직참여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empowerment)의 요청 ⑥ 조직 규모의 확대(대규모 조직 - 구성원 수 다수) ⑦ 구성원의 인적 전문화 및 능력 향상 ⑧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 요청 ⑨ 최고 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자 할 때 ⑩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답 ①

17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②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해설

①②③⑤ 내부 공식적 통제, ④ 외부 공식적 통제

☒ 행정통제의 유형

외부 통제	공식 통제	입법통제	① 입법권에 의한 통제 : 법률 제정·개폐, 조약체결·비준 동의 ②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 : 예산 심의·의결, 결산승인, 기채(국채발행) 동의 ③ 국정운영에 대한 통제 :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권, 주요 인사의 임명동의·해임건의·탄핵소추와 인사청문회, 정책에 대한 질의·질문, 청원의 처리
		사법통제	① 법원의 행정소송과 명령·규칙 위헌심사 ☒ 법원의 행정소송은 외부통제인 사법통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은 내부통제 ②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등
		옴부즈맨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속·저렴한 해결, 간접적 통제권만 가짐
내부 통제	공식 통제	민중통제	정당, 이익집단, NGO(시민단체), 언론·매스컴, 인터넷, 여론, 정책공동체, 시민참여·주민참여, 선거·투표(선거·투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비공식통제인 민중통제로 분류) 등에 의한 통제
		통제 주체별	① 행정수반(대통령),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공직복무관리관) ②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 : 감사원의 결산검사·회계검사·직무감찰 ③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중앙행정심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처리) ④ 교차행정조직(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⑤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행정심판) ⑥ 계층제를 통한 감독자에 의한 통제(headship, 행정적 권위 활용) ⑦ 중앙통제(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감사, 지방채발행 승인 등)
	비공식 통제	통제 내용별	① 정책 및 기획통제 : 국무회의(주요 정책 심의), 차관회의(조정 및 협의) ② 운영통제(관리통제)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정책품질관리 및 차관회의 주재 ③ 요소별 통제 : 법제통제(법제처), 예산통제(기획재정부), 정원통제(행정안전부), 인사통제(인사혁신처), 물자통제(조달청), 홍보(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로 교차행정조직에 의한 통제 ④ 절차통제 : 보고, 지시, 내부결재제(품의제), 장부 통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⑤ 감찰통제 : 행정감사, 회계감사, 직무감찰
		비공식 통제	① 공직윤리·행정윤리(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통제 ② 행정조직 내의 비공식적 조직,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③ 공무원단체(부정부패의 내부견제, 정실인사 비판 등) ④ 대표관료제 ⑤ 행정문화 : 조직 내 하위문화에 의한 통제

답 ④

18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④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⑤ 재정운용의 비능률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해설

- ① (○)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결산 : 1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예산 : 1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
③ (○) 결산의 기능 : 재정 통제 기능(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지 사후 확인)
재정 환류 기능(결산 심의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자료로 환류)
④ (×) 결산의 효과
㉠ 결산은 국회의 사후 심의로 확정되며, 이로써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최종적으로 해제됨.
㉡ 결산의 효과는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 국회의 결산확정으로 정부의 정치적 책임이 해제되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적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으며, 위법·부당한 지출이라도 무효화나 취소할 수 없음.
⑤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답 ④

19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 ②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한다.
-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조된다.
- ④ 정책이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 ⑤ 정책결정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와 정책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 ① (○)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단적 행위로 인식하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집행체제의 운영방식에 초점을 둔다.
- ② (○)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정책목표의 달성)이 성공적 정책집행이라고 본다.
- ③ (×)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만 주요 행위자로 보므로 일선 집행관료들의 능력과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반대세력의 전략과 입장 등 집행현장에서 중시되는 요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함).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 ④ (○)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과정의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고전적 접근방법이다.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은 성공적 집행의 핵심조건이며 집행자의 재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정자의 통제력과 집행자의 순응을 정책집행의 성공요건으로 본다.
- ⑤ (○) 정책결정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인 정책결정자와 결정된 정책내용의 충실한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답 ③

20 정책과정의 참여자 중 공식적인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이익집단 ② 입법부 ③ 정당 ④ 시민단체 ⑤ 민간전문가

해설

☒ 정책과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자
① 입법부(의회,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정부조직 밖에서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② 행정부(행정수반-대통령·수상, 행정기관, 행정관료)	① 정당(여당·야당) ② 이익집단·압력단체
③ 사법부(법원, 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③ 일반국민, 여론 ④ NGO(시민단체)
④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행정기관)	⑤ 전문가·학자, 정책공동체 ⑥ 언론·매스컴

답 ②

21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회피신청이 면제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 ② (○)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 가치갈등 해소

- | | |
|-------------------------------------|--|
| <p>규범적
사회적
협조적
전략</p> | <p>① 개혁의 규범적 당위성을 높이고 적절한 상징조작과 사회적·심리적 지원을 통한 자발적 협력과 수용을 유도.</p> <p>㉠ 개혁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전달 확대, 학습조직의 활용</p> <p>㉡ 개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혁의 당위성 및 예상되는 성과를 제시하여 설득</p> <p>㉢ 개혁안에 대한 집단토론 촉진. 집단사고 방지를 위해 생산적 비판이 제도화되는 의사전달 시스템 필요</p> <p>㉣ 태도·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훈련, 자기계발 촉진시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p> <p>㉤ 조직 전체의 목표 추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개인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킴</p> <p>㉥ 개혁지도자의 신망·위신·카리스마 제고와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로 개혁의 수용을 쉽게 함</p> <p>㉦ 개혁에 적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며(개혁 수용에 필요한 시간 허용),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 해소의 기회 마련</p> <p>㉧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양립가능성 강조하여 가치 갈등으로 인한 저항 극복</p> <p>② 효용 : 저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직의 인간화를 강조하는 경우 가장 선호되는 방법</p> <p>③ 한계 :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됨.</p> |
| <p>공리적
(호혜적)
기술적
전략</p> | <p>① 관련자의 이익침해를 방지 또는 보상하고, 개혁과정의 기술적 요인들을 조정하여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p> <p>㉠ 기득권을 덜 침해하거나 기술적인 것부터 실시, 개혁안의 점진적 추진</p> <p>㉡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리한 시기를 선택</p> <p>㉢ 개혁안을 가능한 한 객관적·계량적으로 제시(개혁안 명확화),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술 사용</p> <p>㉣ 개혁의 방법·기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신축성 있는 적절한 인사배치(개혁에 적합한 인사 임용)</p> <p>㉤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협상), 신분과 보수의 유지 약속</p> <p>㉥ 개혁의 가치와 개인 이득의 명확화</p> <p>② 효용 : 피해집단이 저항하는 경우,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저항인 경우 유효</p> <p>③ 한계 : 많은 비용이 들고, 저항에 양보·굴복하는 결과를 초래. 장기적 효과 기대 곤란. 개혁의 의미 퇴색.</p> |
| <p>강제적
전략</p> | <p>① 최종적인 저항 극복방법으로 저항자에 대해 물리적 제재나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는 방법.</p> <p>㉠ 계층제 상 권한(상·하 서열관계) 사용, 의식적인 긴장 조성을 통해 개혁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p> <p>㉡ 권력구조의 일방적 개혁으로 저항집단의 세력 약화</p> <p>㉢ 신분상 불이익처분 같은 압력을 가하여 저항을 억압</p> <p>② 효용 : 긴급한 상황에서 개혁추진자가 강한 권력을 보유한 경우 유효</p> <p>③ 한계 : 단기적 대증요법으로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함, 긴급을 요하고 개혁추진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많은 부작용과 또 다른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음.</p> |

26 2022년 행정사 행정학

- ④ (○) **분권화 전략** : 조직이 분권화되면 계층이 줄고 명령과 책임 계통이 분명해져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음. 공식조직뿐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님.
- ⑤ (×) **인간·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임.**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구조적 (제도적) 접근방법	공식적·합리적 조직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예 원리전략, 분권화 전략 등), 공식적 조직의 내부구조를 개선·합리화. * Hoover위원회의 활동,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 관련이론 : 고전적 조직론, 원리접근법, Weber의 관료제론 * 원리전략(최적 구조의 설계) :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 수행을 가져온다는 전략. 기능중복 제거, 책임 재규정, 조정·통제절차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 * 분권화 전략 : 조직이 분권화되면 계층이 줄고 명령과 책임 계통이 분명해져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음. 공식조직뿐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님.
	① 구조·직제 간소화, 기능중복 제거 ② 명령계통·통솔범위 조정 등 조직원리 적용 ③ 행정사무의 적절 배분, 권한·책임 명확화, 책임의 재규정 ④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확대 ⑤ 의사전달[의사소통] 체제의 개선 ⑥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⑦ 조직의 통·폐합,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 단점 ① 개도국에서는 구조와 현실적인 기능과의 불일치(형식주의)가 심하여 적용 곤란. ② 조직 내부 구조만 중시. 인간적·행태적 요인이나 조직단위 간 권력관계 등을 과소평가. ③ 조직의 동태적 성격과 환경적 요인 경시.
관리 기술적 (과정적 절차적) 접근방법	행정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정기술·장비·수단 개선, 계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체제의 과정, 업무처리 절차나 운영기술, 일의 흐름 개선	• 관련이론 : 과학적 관리론, 관리과학, 체제분석, 계량화모형 • 장점 : 업무수행의 능률성 제고와 성과향상, 기술적 쇄신을 통해 표준적 절차와 조직의 과업수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조직행태와 인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① 업무·기술·절차·장비의 전문화·기계화·표준화 ② OR(관리과학·운영연구)·SA(체제분석), 행정전산화(OA, EDPS), 정보시스템(PMIS) 등 과학기술 활용 ③ 직무분석·직무평가, 문서양식 개선, 사무관리, 정원관리, 봉급책정 ④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BPR), 행정민원절차의 간소화	• 단점 ① 계량적 기계모형, 현실세계를 너무 단순화시켜 파악, 기술과 인간성 간의 갈등을 경시. ② 구성원의 기술활용능력 부족시 적용 곤란. ③ 신생국은 기술적 접근을 활용할 여건과 전문인력이 부족.
인간· 행태적 접근방법	• 행정인의 가치관·신념·태도를 인위적으로 조작적 전략이나 실험실 훈련 등에 의하여 변형시켜 행정체제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접근 방법 • 상황적·자발적 성격	• 관련이론 : 인간관계론, 행태주의, 행태과학 • 장점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 • 단점 ① 장기간 시간 소요(행태변동은 단기간에 곤란), 법적 제약. ②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의의 수용이 어려운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 서는 곤란. ③ 비공식적 감정적 측면에 치중, 공식적 계층제적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에 전면 적용 곤란.
	① 중요 의사결정에의 참여 ② 감수성훈련, 과정상담, MBO 등 조직발전(OD)기법 ③ 조직역학(group dynamics)	
통합적 종합적 접근법	통합적·총체적 개선(구조 + 기술 + 행태). 개방체제 관념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의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법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려는 접근 방법.	• 전체적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체제이론·상황이론을 주요 기반으로 함 • 단점 : 개혁추진자들의 실천적 작업에 많은 부담을 줌
사업중심 접근방법	산출/정책 중심적 접근. 행정산출의 정책목표와 내용, 소요자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법. 정책분석과 평가, 생산성 측정, 직무감사, 행정책임평가 등이 주요 도구.	
문화론적 접근방법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 의식적·계획적인 개입에 의해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달성하는 것.	

답 5

2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론

고전적 기술 관료형 (classical technocrats)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 • 결정자는 계층제적(위계적) 명령구조를 형성하고,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내용을 결정하며, 특정 집행자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만 위임. • 집행자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자가 충실히 집행. 결정자가 정책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함. • 집행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님.
--	---

지시적 위임자형 (instructed delegates)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됨. •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는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 •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집행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다만 수단의 선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지니게 됨. • 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관리적]·협상적[교섭적] 능력을 소유.
협상자형 (bargainers)	•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 반드시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지만 집행자와 목표의 소망성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결정자와 집행자 간, 집행자 상호 간 목표와 수단에 관해 협상하며, 힘과 협상력이 우월한 집단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됨.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때 나타남.
재량적 실험가형 (discretionary experimenters)	•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 능력이 없고, 집행자에게 광범한 재량을 위임하려는 유형. • 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그침(결정자는 추상적인 일반 목표는 지지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 • 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 • 집행자는 과업의 수행의사와 수행능력이 있음.
관료적 기업가형 (bureaucratic entrepreneur)	•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완전히 통제 • 집행자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이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홍정하여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얻어낼 수 있음. • 집행자는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며 달성할 능력도 보유.

답 ①

25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사회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 대상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
- ②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국민적 관심과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도가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 ⑤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설

- ③ (×)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정책과정이다.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정책 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 역학관계가 작용한다.

답 ③